

FAX) 02-6442-4969

제출방법 : 팩스전송 FAX) 02-6442-4969



금액 : ₩ 40,000 (1인 당) 계좌번호 : 우리은행 147-05-002503 (사)정해복지부설한신메디피이
보건증 별도 신청시 추가금 발생 : ₩ 9,000 (1인 당) / 근로자의 보건증이 필요한 사업장만 신청 바랍니다.



2. 전자계산서(면세) 발행 후 꼭 승인 하십시오. 미승인 시, 다음 달 국세청에서 일괄 전송됩니다.

1. 검진 전날까지 입금 확인 시에만, 검진 다음 날 법무부로 일괄 통보됩니다.
2. 단체검사 신청 시, 별도 검사 결과가 발행되지 않습니다.
3. 출입국관리소 전산으로 자동 통보됩니다.

상담가능시간 08:30~15:30 **점심시간** 12:40 ~ 13:40

업체명		담당자 성명	
업체 전화번호		담당자 연락처	
업체 주소			
사업자 등록 번호			
업태		종목	*업태 세부 종목 기록 기재
전자계산서 이메일주소	*누락 시 추후 발행 불가합니다.		
환불 받을 계좌	*은행/계좌번호/예금주		

아래 외국인 근로자 정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보내드린 '입국안내 자료'를 활용하여 빠짐없이 기재바랍니다.

	외국인 근로자 성명	국적	성별	입국일	보건증 신청여부 (V표시 포함)
1					
2					
3					
4					
5					

2012년 8월부터 "외국인 마약검사 확인서 징구정책"에 따라 입국 후 취업교육기관 건강검진 시 마약검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.

상기와 같이 외국인 근로자 취업교육 기간 중 마약검사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 신청업체 대표: (인)